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5가단5340111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한국무역보험공사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16. 9. 20.

판결 선고2016. 11. 25.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30,422,300원 및 그 중 129,812,890원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5. 10. 28.까지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15. 7. 8.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5. 7. 9. 접수 제43153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수출신용보증계약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2015. 2. 23.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소외 IBK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61,000,000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소외 은행에게 신용보증한도를 128,800,000원, 보증기간을 2015. 2. 18.부터 2016. 2. 17.까지로 정하여 수출신용보증을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원고가 위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금액 및 그 지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행·행사에 소요된 비용과, 그 금액에 대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연체이율을 더한 금액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의 국내보상요강 제27조 제1항은 소외 회사가 속하는 중소기업군에 대한 연체이율을 연 11%로 정하고 있다.

2) 피고 A은 2015. 2.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서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대위변제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원고의 신용보증을 기초로 소외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지급받았으나 2015. 7. 18. 이자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원고는 2015. 8. 26. 소외 은행에 위 대출원리금 합계 129,812,897원(원금 128,800,000원 + 이자 1,012,89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무렵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609,410원을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다. 처분행위

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A은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7. 8.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7. 9.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제43153호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고, 가등기권자를 피고 B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예약일에 피고 A에게 위 가등기를 담보로 합계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A은 위 돈을 채무자회생절차신청을 위한 대리인 선임 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

라. 피고 A의 채무 초과

피고 A은 2015. 7. 8. 당시에 적극재산으로 ① 시가 2억 2천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및 ②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경산시 D아파트 제102동 제7층 제703호가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합계 1,247,572,818원

[=202,259,921원(중소기업진흥공단)+567,500,000원(기술신용보증기금)+129,812,897원(한국무역보험공사)]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가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경산시장의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서 소외 은행에 대위변제한 129,812,890원과 채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609,410원의 합계 130,422,300원(129,812,890 + 609,410)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29,812,89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8.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5. 10. 28.까지 약정된 연 11%의 비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다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근거가 된 원고의 대위변제가 이 사건 매매예약의 체결일인 2015. 7. 8. 이후인 2015. 8. 26.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전인 2015. 2. 23. 이미 대위변제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또한 소외 회사는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위 대위변제일 이전인 2015. 7. 1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피고 A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러한 소외 회사의 채무 불이행 사실이나 관련된 재정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수익자의 악의

1) 피고 A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 B의 선의 항변 가) 주장

(1) 피고 B은 피고 A을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에 알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선순위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나머지 담보가치를 파악하여 그 범위 내인 30,000,000원을 피고 B에게 대여하면서 담보가등기를 경료한 것이어서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일 뿐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대구지방법원 E 임의경매사건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된 바 있는데, 그 절차 내에서 실시한 시가 감정 평가액은 230,000,000원이고 압량농협, 경산시, 경산세무서 등이 위 시가의 1.5배 이상에 이르는 채권을 가지고 우선 배당을 받게 되어 있어서 피고 B은 배당순위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고 피고 A이 달리 위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바, 이러한 피고 A의 채무초과 상황을 피고 B이 알고 있었더라면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하였을 리 없으므로,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에 '악의'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피고 B이 피고 A에게 위 가등기를 담보로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갑 제8, 9호증, 을나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압량농협의 신청에 따라서 대구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가 2016. 9. 6. 경매신청의 취하로 그 절차가 종료되었고, 그 종료 이전에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실시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 감정의 평가액은 230,000,000원이고, 신고된 채권액으로서는 근저당권자인 압량농협의 채권이 145,686,860원이고, 교부권자인 경산시의 채권이 14,381,240원, 경산세무서의 채권이 194,168,710, 가등기권자인 피고의 채권이 30,000,000원으로서 피고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되는 채권자들인 압량농협과 경산시, 경산세무서의 채권 합계액이 경매의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이미 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위 경매가 그대로 진행되었더라면 가등기권자인 피고가 배당받을 돈은 남아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은 일반 채권자의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이러한 위험이 생긴 경우에 그 취소를 허용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회복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과 효과로 삼는 것이므로, 채무자인 피고 A이 이미 채무가 초과되어 변제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 B에게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된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채무 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한편 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이를 기초로 가등기를 하여 그 매매예약이 완결되면 바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것은 채무자의 공동담보를 훼손시키는 행위임이 분명하고, 피고 B이 주장하는 위 경매와 관련된 사정은 위 매매예약 당시에 이미 복수의 채무자가 존재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며 더욱이 위 경매신청이 이미 취하된 마당에 악의의 추정을 반복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 B의 '선의'에 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상회복 의무

그렇다면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8. 체결된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B은 피고 A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5. 7. 9. 접수 제43153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유영일

별지